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천현 전문위원 정천현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2년 2월 26일

나. 회부일자 : 1992년 2월 27일

3. 제안이유

- 도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유재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도유재산의 취득 및 무상대부에 관한 계획

가. 취득재산

덕유감시초소 부지매입 2필지 2,176㎡

-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산 73-1 임야 1,707㎡

-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산 73 임야 469㎡

(취득사유)

- 초소개축을 통한 근무환경개선
- 대청호 불법낙시 단속용이로 상수원 보호강화

나. 무상임대 계산

○ 충청북도 체육고등학교 시설부지내 편입 도유지 2필지 2,758㎡

- 청주시 사직동 798 운동장 750㎡중 510㎡

- 청주시 사직동 798 운동장 2,603㎡중 2,248㎡

※ 건물 신축후 부지면적 비율에 의하여 건물 기부채납 조건부 무상대부

(취득사유)

- 학교시설 편입 도유지 무상대부를 통한 학교설립 실현으로 체육인재 양성
- 체육인재 양성을 통한 도위선양

5. 검토의견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청원군 문의면 소재 임야를 매입코자 하는것은 감시초소 건축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초소는 대청호 호반에 위치하고 있어 대청호 주변의 환경정화 및 불법 낙시군의 단속이 용이하여 청주시, 청원군 일원에 공급되는 생활용수 공급원인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으며

○ 충북고등학교 시설부지내 편입 도유지의 임대건은 동 부지를 충청북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하여 체육고등학교 건물을 신축 운영케 함으로써 우수한 체육인 양성을 통한 충청북도 도민의 긍지를 높여주는 한편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학교시설에 편입된 도유지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기부채납조건부로 (충청북도 공유재산조례 제20조) 임대조치 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문이 아니구요. 지금 충청북도, 충북체육고등학교 시설부지하는 것이 종전에는 청주시의회와 교육청과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슨 대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서로 맞바꾸는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산이 되어 가지

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기부 채납받는 협회가 청주시의회가 교육청과 또 충청북도와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 인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문제때문에 메스껍도 굉장히 여러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만 해 주십시오.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지금 안되면 어떻게 이해가 안됐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 재무국장 김용덕 그 내용은 청주시의회에서 해결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주시에서 요청이 있어